

GAFSC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News Letter

2015년 3분기

Vol. **04**



국가회계 동향

재정통계 동향

오피니언

센터 동향

IPSASB 회의참관 후기

공지사항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선도합니다.



Contents

국가회계 동향

재정통계 동향

오피니언

센터 동향

IPSASB 회의참관 후기

공지사항

01

국가회계 동향

1 국가회계 국내동향

가. 국가회계제도 개선 T/F 운영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회계제도 개선 T/F(이하 ‘T/F’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T/F는 분야별로 ‘법령·예규’, ‘결산보고서’,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항 및 디브레인 시스템’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이러한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개선이 필요한 과제부터 국가회계기준과 운영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1, 2차 T/F회의를 통하여 ‘법령·예규’ 분야와 ‘결산보고서’ 분야의 개선과제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6차 T/F까지 진행이 완료되었다. 논의가 완료된 과제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4분기에 개최될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디브레인 시스템 관련 개선과제는 중앙관서 결산 실무자의 의견과 자체 발굴과제를 취합하여 개선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중 연내 개선이 가능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개선 완료시기를 정하여 매월 ‘dBrain 개선 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나.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처리지침 개정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각각 7월 3일, 7월 31일, 9월 11일에 개최되었다. 소위원회에서는 총 13개의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민간전문위원(위원장 김경호 교수 외 9인),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이호모 과장 외 4인) 및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원(김은영 국가회계팀장 외 5인)이 참석하였다. 소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된 안건은 4분기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회일	구분	안건
7월 31일	보고안건	'14회계연도 재무결산 추진결과 보고
		국가회계제도 개선계획(안) 보고
	심의안건	「연금 회계처리지침(예규)」 일부 개정(안)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예규)」 일부 개정(안)
7월 31일	심의안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일부 개정(안)
		- 제45조(용자보조원가충당금과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및 제55조(주식)
	논의안건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예규)」 일부 개정(안)
		비교환거래로 인한 비용의 인식기준 개선안 관리전환 회계처리 개선안
9월 11일	심의안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일부 개정(안)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예규)」 일부 개정(안)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예규)」 등 일부개정(안)
		「비용회계처리지침(예규)」 일부개정

다. 2015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함께 2015회계연도 재무결산을 대비하여, 내부거래 사전 제거 및 계정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등의 사전 검토를 위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중간점검에서는 내부거래 제거, 건설 중인 자산 적정성 검토 등 기존 점검 항목에 추가로 부대비 배부 누락 가능성이 높은 '계약전 부대비 지출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게 된다.

중간점검은 201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회계처리를 대상으로 하며, 각 회계·기금별로 자체점검보고서를 10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점검보고서를 취합 및 분석하여 부처별 점검 실적을 확인하고, 점검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자체 보고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중간점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간점검설명회를 9월 18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설명회에서는 중간점검 항목에 대한 점검 방법 안내뿐만 아니라 「201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책자를 배포하고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하였다.

2 국가회계 해외동향

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동향

1)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서 적용에 관한 공개초안 56 발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PSASB'라 한다)는 2015년 7월 30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서(이하 'IPSASs')에 적용할 공개초안 56을 발표하였다. 공개초안 56에서는 IPSAS 1 '재무제표 표시'의 정의문단에서 '공기업(GBE)' 용어를 삭제하고, IPSASs 및 실무적용지침(RPG: Recommended Practice Guideline)의 범위문단(scope)에서 '공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이번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개정사항들은 IPSASs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부문회계실체의 범위에 대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IPSASB는 '공기업'에 속하는 회계실체의 범위에 대하여 폭넓은 피드백을 받았고, 이 중 일부는 IPSASB가 의도한 공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았으며, 공기업의 정의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IPSASB 위원장인 Andreas Bergmann은 “공개초안 56은 공공부문회계실체의 유형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한 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부문회계실체의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기초로 하는 높은 수준의 원칙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공개초안은 공공부문회계실체가 IPSASs를 적용하는 데 있어 규제당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공기업의 정의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이며, 2015년 11월 30일까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개초안 56은 공기업과 기타 공공부문회계실체의 IPSASs 적용대상 여부를 다룬 자문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표되었다. 자문보고서는 IPSASs 적용대상 회계실체에 대하여 두 가지 주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IPSASs에서 의도하는 공공부문회계실체의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고, 둘째는 공기업의 정의를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부문회계실체’로 축소하여 수정된 형태의 공기업 정의 문단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자문보고서에 대한 응답자의 대다수는 공기업의 정의를 수정하여 유지하는 것보다는 공공부문회계실체의 특성을 기술하는 첫 번째 방안을 지지하였다. 공개초안 56은 이러한 첫 번째 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2) ‘사회급여의 인식 및 측정’에 대한 자문보고서 발표

IPSASB는 2015년 6월 29일, ‘사회급여의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의견 요청을 위하여 자문보고서를 발표하였다.

IPSASB 위원장인 Andreas Bergmann은 “이용자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급여의 재정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한다. IPSASB는 이 분야에 지침서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자문보고서는 사회급여를 적절하게 보고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우리가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급여는 사회적 위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개인 또는 가계에 제공되는 급여로, 대중에게 이러한 사회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 정부의 주요 목적이며, 사회급여는 정부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사회급여 프로젝트’의 범위는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포함하지만, 기타 현물이전, 건강보험이나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과 같은 공공 재화와 용역은 제외한다.

자문보고서에서는 사회급여를 설명하기 위하여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 대안 1 : 의무발생 사건 접근법

이 접근법은 ‘공공부문 회계실체의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상 부채의 정의를 참조하여 사회급여를 지급하는 의무를 다른 의무들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주요 이슈는 현재 의무 발생 시점이다.

- 대안 2 : 사회계약 접근법

이 접근법은 국가와 국민사이에 귀속된 사회계약이라는 견해를 기초로 한다. 이 사회계약하에서는 국민들이 국가가 사회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는 것에 동의한다. 이것은 상업 거래에서의 미이행 계약과 유사하다. 의무는 강제집행 시점(또는 사회급여에 대한 청구 승인시점)에 인식된다.

- 대안 3 : 보험 접근법

이 접근법은 일부 사회급여가 보험계약과 실제로 유사하다고 본다. 이 접근법은 현금의 유입 및 유출에 대한 순현재가치 측정 방식으로 보험 회계 모형을 이용한다.

(출처) IPSASB Press Releases/News (Jul 30, 2015)

<http://www.ifac.org/news-events/2015-07/ipsasb-publishes-exposure-draft-56-applicability-ipsasb>

나. 미국 연방회계기준 자문위원회(FASAB) 동향

1) 진행 중인 프로젝트 세부 내용 논의

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이하 'FASAB'라 한다)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재무보고 개념체계 정립, 국방부 이행지침 요청 프로젝트 등이며, 2015년 6월 24~25일간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FASAB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5년 6월 24일~25일간 진행된 FASAB의 회의 내용〉

프로젝트	내 용
Concepts - The Financial Report (재무보고 개념)	• 수익보고에 대한 실무사례와 이상적인 보고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개념서의 공개초안 논의
DoD Implementation Guidance Request Project (국방부 이행지침 요청 프로젝트)	• '재고와 군수품(OM&S), 비축물자의 기초 잔액' 공개초안(2015. 7. 20.) 발표
Leases(리스)	• 리스기준의 범위 및 기본원칙, 리스기간과 리스이용자 모형 등 연구진행사항 보고
Public Private Partnerships(민관협력사업)	• '민관협력사업: 공시사항'의 공개초안 검토

2) 재무보고 개념

FASAB는 수익보고에 관한 실무사례와 이상적인 보고모형을 위한 개념서의 공개초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FASAB는 수익보고에 관한 실무사례를 통해 부문별 수익 보고 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이상적인 보고모형을 위한 개념서의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위원들은 '재무보고의 목적'과 다음의 '재무보고 시 우선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정부통합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
- 재무보고의 범위
- 재무제표와 다른 재무정보원천과의 관계
- 부문 및 예산정보에 관한 보고

논의 결과, 재무보고 시 우선사항은 FASAB의 전략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출처) <http://www.fasab.gov/projects/active-projects/concepts-the-financial-report/>

3) 국방부 이행지침 요청 프로젝트

FASAB는 2015년 6월 2일, 연방정부회계기준서(이하 '기준서') '재고와 군수품, 비축물자의 기초잔액(Opening Balances for Inventory, Operating Materials and Supplies (OM&S) and Stockpile Materials)'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준서 제3호 '재고자산과 관련자산 회계(Accounting for Inventory and Related Property)'에서 기초잔액을 역사적원가로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재고와 군수품, 비축물자의 기초잔액에 대한 가치평가에 합리적인 추정치로 사용할 지침서를 FASAB에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발표된 기준서에서는 재고와 군수품, 비축물자의 기초잔액 측정 시 대체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에 따른 재무재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서는 2016년 9월 30일 후의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며 조기 적용을 권장한다.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은 2015년 7월 20일까지 요청되었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fasab.gov/board-activities/documents-for-comment/exposure-drafts-and-documents-for-comment/>

또한 FASAB는 국방부에서 요청한 유형자산의 역사적원가 평가 시 자본적지출 회계처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FASAB는 자본적지출의 원가를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방부의 일반유형자산 평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서를 제·개정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논의되었던 다양한 대안 중 특정 방안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조사연구실은 향후 일반유형자산 기준서에서 다뤄질 수 있는 부동산, 군사장비 및 토지 등 관련 된 이슈를 모두 고려할 것이다.

(출처) <http://www.fasab.gov/projects/active-projects/dodguidance/>

4) 민관협력사업

FASAB는 2015년 6월 5일 회의에서 ‘민관협력사업(P3s: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공시사항에 관한 기준서의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공개초안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 민관협력사업 실무그룹의 제안 및 FASAB의 토론 결과 등이 반영되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1) 민관협력사업의 정의 문단에 관련 계약이나 거래가 5년을 초과해야 한다는 필수사항을 추가하고, (2) 기존 정의 문단에 포함되어 있던 ‘4가지 특성’을 삭제하고, 위험 기반의 특성을 지닌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3)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삭제한 것이다.

다른 견해를 가진 Dacey 위원은 “중요성에 관한 설명이 명확해야 한다. 특히 결론 도출 근거에 중요성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위험과 관련된 문단23d의 ‘계약상’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고 제안하였다.

위원들은 이번 기준서 개정안의 공개초안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공개초안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항들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데 일반적으로 동의하였다.

FASAB는 이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로 완전한 기준서를 마련한 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http://www.fasab.gov/projects/active-projects/public-private-partnerships/>

02

재정통계 동향

1 재정통계 국내동향

가. 2014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결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6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 등을 2015년 8월 20일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주요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무상태

(단위: 조원, %)

구 분	자산				부채			
	2013년	2014년	증감	(%)	2013년	2014년	증감	(%)
공기업	548.3	559.2	10.9	2.0	373.7	377.1	3.4	0.9
준정부기관	156.8	165.8	9.0	5.7	136.9	138.7	1.8	1.4
합계	705.1	725	19.9	2.8	510.6	515.8	5.2	1.0

(자산)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자산은 725.0조원으로 전년 대비 19.9조원(2.8%) 증가했으며, 주요 증감원인은 전력, 가스, 도로 등 설비투자 증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수의 증가임

(부채)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부채는 515.8조원으로 전년 대비 5.2조원(1.0%) 증가했으며, 주요 증감원인은 설비투자 등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한 차입금 증가 및 장학재단의 채권 발행 증가에 따른 것임

(2) 손익상황

(단위: 조원, %)

구 분	영업수익(매출액)				당기순이익			
	2013년	2014년	증감	(%)	2013년	2014년	증감	(%)
공기업	147.9	153.5	5.6	3.8	△2.4	4	6.4	267.1
준정부기관	104.2	110.9	6.7	6.4	8.2	7.5	△0.7	△8.0
합계	252.1	264.4	12.3	4.9	5.8	11.5	5.7	98.3

(당기순이익)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당기순이익은 11.5조원으로 전년 대비 5.7조원(98.3%) 증가했으며, 주요 증감원인은 철도공사 4.0조원*, 한국전력공사 2.6조원 등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인함

* 철도공사는 2013년 용산사업 해제에 따른 사업해제손실 4.3조원 등으로 인해 순손실 발생

나.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행정자치부는 2015년 6월 25일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며 크게 세 종류(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로 구분된다. 지방공기업의 현황 및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기업 연도별 현황

(단위: 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직영기업	상수도	115	115	116	117	116
	하수도	82	85	87	87	90
	공영개발 등	33	33	33	32	33
	지역개발기금	16	18	18	18	18
소계		246	251	254	254	257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하철	7	7	7	7	7
	도시개발	16	16	16	16	16
	기타공사	31	36	36	37	38
	지방공단	79	78	78	80	82
소계		133	137	137	140	143
합계		379	388	391	394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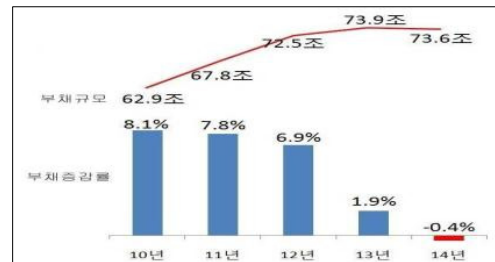
주: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설치되며,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하고 지방 공단은 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다.

(2)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예산	자산	부채	경영성과
직영기업	상수도	65,559	284,651	11,240	(930)
	하수도	55,903	350,946	59,786	(13,363)
	공영개발 등	26,034	85,283	30,400	7,538
	지역개발기금	62,606	149,190	126,892	1,849
소계		210,101	870,071	228,318	(4,905)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하철	45,907	251,998	58,925	(9,018)
	도시개발	256,580	587,236	418,456	6,332
	기타공사	31,650	60,201	28,589	(1,391)
	지방공단	19,584	9,038	2,190	18
소계		353,721	908,474	508,160	(4,060)
합계		563,822	1,778,545	736,478	(8,965)

2014년 결산결과 부채규모가 전년 대비 0.3조원 감소한 73.6조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채증감률 또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26개의 부채 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하여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 2016년도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는 2015년 9월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총량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지출을 3%(11.3조원) 증가시켰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경제성장을 통한 세입 확충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단위: 조원, %, %p)

구 분	2015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B-A)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총수입	382.4	24.0	391.5	24.3	9.1	2.4
총지출	375.4	24.0	386.7	24.0	11.3	3.0
재정수지 ¹⁾	△33.4	△2.1	△37.0	△2.3	△3.6	△0.2%p
국가채무	595.1	38.5	645.2	40.1	50.1	1.6%p

주: 1) 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임

(2) 분야별 자원배분

기획재정부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분야는 핵심역량 위주로 지원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분야별 자원 배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조원, GDP 대비 %)

구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안(B)	증감(B-A)	
			금액	GDP 대비 %
총지출	375.4	386.7	11.3	3
1. 보건·복지·노동	115.7	122.9	7.2	6.2
2. 교육	52.9	53.2	0.3	0.5
3. 문화·체육·관광	6.1	6.6	0.5	7.5
4. 환경	6.8	6.8	-	0.4
5. R&D	18.9	18.9	-	0.2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4	16.1	△0.3	△2.0
7. SOC	24.8	23.3	△1.5	△6.0
8. 농림·수산·식품	19.3	19.3	-	0.1
9. 국방	37.5	39	1.5	4
10. 외교·통일	4.5	4.7	0.2	3.9
11. 공공질서·안전	16.9	17.5	0.5	3
12. 일반·지방행정	58	60.9	2.9	4.9

투자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청년희망을 위해 직업훈련, 창업·취업 지원 강화 예산을 확대하였다. 또한 문화융성 예산으로 문화창조융합센터, 의료, 관광,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예산을 추가하고, 민생안정 예산으로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강화 예산을 확대·강화하였다.

2 재정통계 해외동향

가. GFSM 2014의 재정분석 활용법 소개

IMF는 GFSM 2014를 통해 산출한 여러 가지 재정지표가 재정분석에 유용하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활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GFSM 2014는 정책분석을 위한 재정통계의 표준으로 정부의 수익, 비용, 지출, 금융자산과 부채의 거래 그리고 재정 상태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재정분석에 필요한 지표도 제공한다.

특히, 최근 국제적인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가 재정준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호주의 경우 중앙 정부에 재정준칙을 적용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공공부문의 지출에 재정준칙을 적용하고 있다. IMF는 이와 같이 재정준칙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GFSM 2014를 통해 산출한 재정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은 GFSM 2014를 통해 산출한 재정지표를 세 개의 국가에 대해 비교한 사례이다.

(단위: GDP 대비 %)

재정지표		정의 또는 측정산식	국가A	국가B	국가C
재정 적자 측정	총운영수지	수익-(비용-고정자본소비)	△0.8	△1.8	0.1
	기초운영수지	순운영수지-이자비용	△1.3	1.6	△0.4
	순운영수지	수익-비용	△2.4	△3.9	△2.3
	순융자/순차입	수익-비용-비금융자산 순투자	△4.1	△3.8	△3.3
	순환조정수지	경제 순환 기간 동안의 수지	△3.7	△3.3	△2.8
	현금수지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비금융자산 투자로 인한 현금유출	△4.1	-	-
금융 거래	총금융거래	금융자산 거래-금융부채 거래	△4.1	△3.8	△3.4
	외환 금융거래	외환금융자산 거래-외환금융부채 거래	-	△2.9	△4.5

(단위: GDP 대비 %)

재정지표		정의 또는 측정산식	국가A	국가B	국가C
채무 측정	총채무	총채무상품	62	131	52
	순유동채무	총채무-유동 금융자산	60	101	46
	순채무	총채무-채무상품에 대응하는 금융자산	41	80	39
기타 지표	조세 부담	조세 수입/GDP	25	33	16
	총고정자본 형성	고정자산 취득-처분	3.1	2	3.5
	사회적 지출	주거, 건강, 교육 및 사회보호에 대한 지출	22	28	24

국가B의 경우 순운영수지($\Delta 3.9\%$)가 가장 큰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총채무비율(131%)에 의한 이자비용 효과($\Delta 5.5\%$)가 중요한 원인이다. 또한 사회적 지출과 조세부담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으며,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 국가B는 많은 조세와 부채조달을 통한 현금 유입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출을 유지하는 국가임을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B가 국가 간 재정지표의 비교를 이용하여 재정준칙을 설정한다면 부채 감축, 이자비용 감소와 같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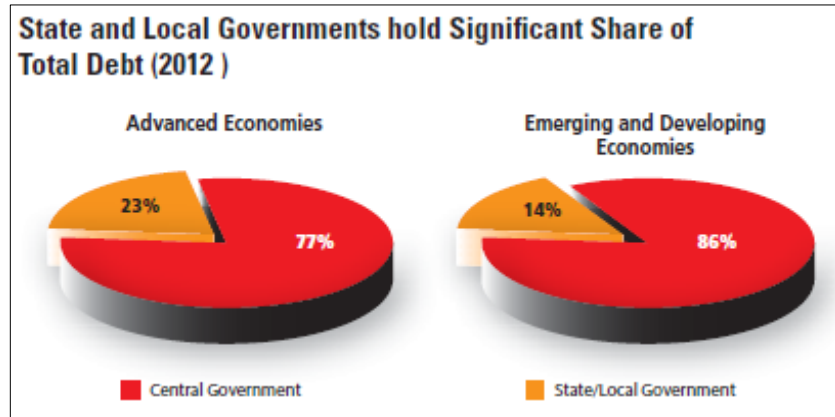
나.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Highlights

IMF 통계국은 최근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Highlights를 통해 일반정부 채무를 중앙 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정부채무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정부채무의 발생원인은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뿐만 아니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State/Local government)로 인해서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1]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주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가 정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채무 규모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선진국에서는 총채무의 23%를 차지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총채무의 14%를 차지한다.

[그림 1] 총채무 중 주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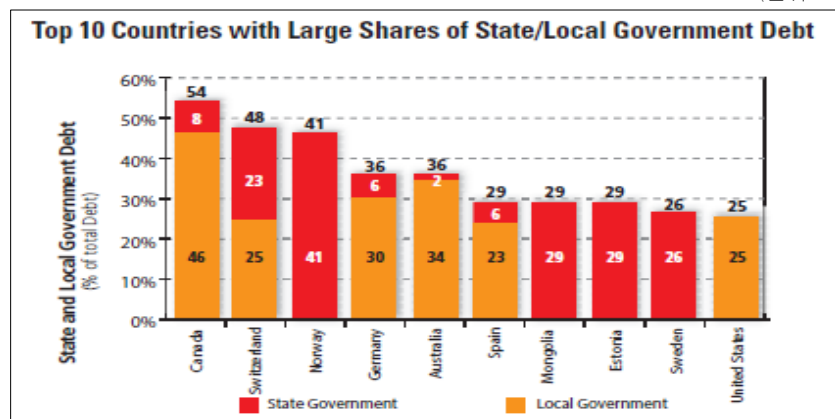
(단위: %)



[그림 2]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채무 보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에서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채무가 정부채무의 34~56%를 차지한다. 이는 지방정부(regions and municipalities) 등이 국가재정정책에서 중요한 파트너임을 보여주며, 국가 정책입안자는 정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폭넓은 접근을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리스,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우루과이 등은 여타 국가의 경우보다 더 중앙 집중형 채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 중앙정부 채무의 집중 관리를 통해 대부분의 정부채무를 커버할 수 있다.

[그림 2] 주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 비중 상위 10개국

(단위: %)



03

오피니언 (1)

수탁책임보고기능의 강화를 통한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성 제고방안¹⁾

정도진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발생주의 도입 4년차인 우리나라에서 발생주의에 의해 작성된 국가재무제표의 재무정보를 국가재정운영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국가재무제표의 주된 기능은 정보이용자 측면보다 작성자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국가경영의 수탁책임을 보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재무제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재무제표의 수탁책임보고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주요 해외국가들은 국가결산보고서를 정보이용자가 아닌 정보제공자 측면에서 정부의 수행 역할에 대한 정보 제공에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Citizens' Guide*와 뉴질랜드의 *Snapshot* 등 국가결산보고서의 요약본에서는 재정수익(어디에서 얼마나 창출되었나?), 재정운영원가(어디에 얼마나 쓰였나?), 정부는 어떤 빚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나?, 정부는 어떤 자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나? 등의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부의 국가경영에 대한 수탁책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국가결산보고서가 수탁책임보고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가령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정도진·김종현(2014)의 설문조사 결과(이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이해가능성은 '보통(3.0)'보다 낮은 수준으로 국가결산보고서의 이해가능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과 재무제표의 유용성에 대해

1) 본 오피니언은 정도진·김종현(2014)이 수행한 『주요국 재무결산 분석 등을 통한 재무보고서 개선방안 연구』에 기초함

서는 ‘보통(3.0)’보다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지만, 결산개요와 성과보고서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보통(3.0)’보다 낮은 수준으로 응답하여, 서술형 또는 계량화된 정부의 수행성과에 대한 보고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현행 제도적 환경에서 국가재무제표의 수탁책임보고기능에 초점을 맞춰 위탁자인 국민들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기 실행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국가결산보고서의 분리보고

현행 세입세출결산은 현금주의를 적용하고 국가재무제표는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이원적 구조임에도, 국가결산보고서는 이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보고서 형식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로 인한 과도한 분량은 국민들의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이해가능성과 접근성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현행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재무제표 부분을 분리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미국(271쪽), 영국(224쪽), 뉴질랜드(188쪽), 호주(218쪽) 등 주요 해외국가들의 국가결산보고서는 우리나라의 1,479쪽보다 훨씬 적은 분량이다.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국가결산보고서의 분량에 대해 ‘보통(3.0)’보다 ‘많은 편’에 가까운 3.52로 응답하였으며,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재무제표를 분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보통(3.0)’보다 ‘그렇다’에 가까운 3.61로 응답하였다.

(2) 대국민보고서 작성 및 홍보

국가결산보고서의 수탁책임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현행 ‘결산개요’와 달리, 해외국가들의 *Citizen’s Guide*나 *Snapshot*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국가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보고서를 작성·홍보에 활용한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미국의 *A Citizen’s Guide*는 백악관 행정관리에산국과 재무부가 협력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현재 재정상태 및 재정건전성을 포함한 주요 재무 topics을 8페이지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통합재무제표 요약보고서(WGA summary report_key facts and figures)는 국제회계기준에 기초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수익 및 지출,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갚아야 할 부채에 대해 보여준다. 뉴질랜드의 *A Snapshot of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는 정부의 재무성과 및 상태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및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들의 공통된 특징은 전문적인 회계용어 대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3)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의 주 재무제표화

현행 재정운영표는 부처별 재정운영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국가재정 전체의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흐름표 대신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를 통해 총잉여금(예산회계 결산)과 재정운영결과(재무회계 결산) 간의 차이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는 필수보충정보로 제공되고 있어,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주된 재무제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재무제표의 각 계정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부속명세서도 해외 및 민간기업 사례에 비춰 주석으로 재무제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재무제표 작성에 IFRS를 적용하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일반적인 손익계산서 형태와 유사한 양식의 손익계산서와 재정운영표로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의 재정운영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금흐름표도 작성·공시하고 있다.

(4) 주석번호 표기 및 재정지표의 확대

해외 및 민간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가 재무제표의 본문에 ‘주석번호’를 표기함으로써 주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 본문에서는 적절한 정보량을 제공하고 주석을 통해 세부설명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정보전달의 효율성과 충분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주석 정보내용과 정보량의 적정성은 ‘보통(3.0)’보다 낮은 2.81 수준이다.

현행 국가결산보고서의 ‘결산개요’에서는 8개의 재정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든 재정지표의 적정성이 보통(3.0)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단기채무상환능력비율, 관리운영비율, 미래세대 유형자산 부담비율 등 재정지표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38%가 제시된 추가적인 재정지표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단기 실행과제로 국가결산보고서에서 공시되는 재정지표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제도적 환경에서 국가 재무제표의 수탁책임보고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국가 재무제표의 책임성 강화

국가 재무제표의 수탁책임보고기능 측면에서 정부는 국가 재무제표를 통해 해당연도 동안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수령한 세금 등을 사용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등 적정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를 보고한다. 이때 국가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의 메시지와 경영진단의견서(MD&A) 및 감사원장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공시할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국가들은 국가결산보고서에 기획재정부장관의 메시지와 경영진단의견서(MD&A) 및 감사원장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포함하고 있다.

(2)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구조 및 표시방법의 개선

해외 및 민간기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본문은 적절한 정보량을 제공하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되, 주석을 통해 세부설명을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재정운영표는 일반적인 손익계산서와 유사하게 비교환수익 등과 프로그램수익에서 프로그램총원가를 차감하는 형식 등으로 작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실례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해외국가들에서는 국가 재무제표 본문에서 주요 계정과목만을 나타내고, 각 계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편, 발생주의 예산회계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재정운영성과에 대해 일반적인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양식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현금주의 예산회계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재정운영표와 마찬가지로 부처별 총원가를 순원가표(Statement of Net Cost)에서 표시하되,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 및 추정외의 변경으로 인한 손익 금액을 운영 및 순자산변동표(Statement of Operations and Changes in Net Position)에서 추가로 제공하여 일반적인 손익계산서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공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성 증대 및 내실화를 위한 단기 실천과제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결산보고서에서 국가 재무제표를 분리하여 보고한다. 둘째,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국민보고서를 작성 및 홍보에 활용한다. 셋째,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를 주된 재무제표에 포함시킨다. 넷째,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명세서를 재무제표의 주석에 포함하고, 재무제표의 본문에 주석번호를 기재한다. 다섯째, 현행 8개의 재정지표 이외에 추가의 재정지표 확대를 고려한다. 또한,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성 및 내실의 고도화를 위해 다음의 중장기 검토과제들을 제안한다. 첫째, 결산보고서에 기획재정부장관의 메시지와 경영진단의견서(MD&A) 및 감사원장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포함하여 작성·공시한다. 둘째,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본문에서는 주된 계정과목을 간단·명료하게 표시하고, 주

석을 통해 세부설명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일반적인 손익계산서와 유사하게 비교환수익 등과 프로그램수익에서 프로그램총원가를 차감하는 형식 등으로 작성한다.

※ 본 뉴스레터의 일부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3

오피니언 (2)

GFSM 2014의 이해(2): 운영보고서와 대차대조표



정성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지난 호에는 IMF에서 최근 발간한 『재정통계 매뉴얼 2014』(이하 GFSM 2014)의 개요, 재정통계 작성의 기본단위인 기관단위(institutional units) 및 부문(institutional sectors), 그리고 기본 개념인 유량(flows)과 저량(stock positions) 및 회계규칙(accounting rules)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GFSM 2014의 4개 핵심 보고서²⁾ 중 운영보고서(Statement of Operations),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및 그 구성항목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1. 운영보고서(Statement of Operations)

현금주의 기반의 GFSM 1986에서 발생주의 기반의 GFSM 2001로 개정되면서 재정통계의 보고 측면에서 매우 혁신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운영보고서의 도입이다.

지난 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GFS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창출, 변환, 교환, 이전 또는 소멸하는 것을 ‘경제적 유량’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거래’와 ‘거래외 경제유량’으로 구분한다. 거래는 다시 교환, 이전(transfer) 등의 ‘화폐성 거래’와 물물교환, 현물보수, 현물이전, 내부거래 등의 ‘비화폐성 거래’로 구분되며, 거래의 경제유량은 자산이나 부채의 ‘보유이득 및 손실’, 상대가격 및 기술 변화,

2) GFSM 2014의 핵심 보고서는 운영보고서(Statement of Operations), 거래외 경제유량보고서(Statement of Other Economic Flows),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현금의 원천 및 사용보고서(Statement of Sources and Uses of Cash) 등의 네 가지 보고서로 구성된다.

재해손실 등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규모의 기타변동(other changes in the volume of assets or liabilities)’으로 구분된다.

운영보고서는 이 중 거래와 관련된 경제유량을 보고하는 것으로, 수익, 비용, 비금융자산 순투자, 금융자산의 순취득 및 부채의 순부담과 관련된 거래를 모두 보여준다. 즉, 운영보고서에는 일반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건(거래)에 대한 회계기간 동안의 유량 변동이 모두 나타난다. 이에 반해 거래외 경제유량보고서에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에 의한 유량 변동이 나타난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회계기간 동안 유량 변동의 요인 분석이 가능하며, 특히 일반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재정운영 책임 및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GFS에서는 경제 유량을 ‘거래’와 ‘거래외 경제유량’으로 분류하였으나, 회계학에서는 거래를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중 하나 이상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제적 사건”으로 정의하므로, GFS에서의 ‘거래외 경제유량’도 회계학상으로는 ‘거래’에 포함된다. GFS의 이러한 분류를 ‘영업’과 ‘영업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운영보고서는 <표 1>과 같이 순자산³⁾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비금융자산의 거래, 금융자산 및 부채의 거래로 구분하여 작성된다.

<표 1> 운영보고서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1	수익
11	조세
12	사회기여금[GFS]
13	출연
14	기타 수익
2	비용
21	피용자 보상[GFS]
22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
23	고정자본소비[GFS]
24	이자[GFS]

3) 순자산(net worth)은 자산의 총가치에서 부채의 총가치를 차감한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의 ‘자본’과 동일한 개념이다.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25	보조
26	출연
27	사회급여[GFS]
28	기타 비용
NOB/GOB	순/총운영수지 (1-2)
비금융자산 거래	
31	비금융자산 순/총투자
311	고정자산
312	재고자산
313	기타 유가물
314	비생산자산
2M	지출 (2+31)
NLB	순융자(+)/순차입(-)[GFS] (1-2-31=1-2M=32-33)
금융자산 및 부채 거래(보전활동)	
32	금융자산의 순취득
321	국내
322	해외
33	부채의 순부담
331	국내
332	해외

주: [GFS]는 그 용어가 SNA와 동일하나, 범위가 다른 경우를 나타낸다.

운영보고서의 첫 번째 부분인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이다. 그리고 순운영수지에서 고정자본소비(consumption of fixed capital)를 합한 값(고정자본소비를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함)이 ‘총운영수지(gross operating balance)’이다. 분석 목적상 일반적으로 순운영수지가 사용되나, 실무적으로 고정자본소비의 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총운영수지가 사용되기도 한다.

수익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다. 일반정부부문에서 수익의 주요 유형으로는 조세, 사회기여금(social contribution), 출연, 기타 수익 등이 있다. 매각이나 물물교환을 통한 비금융자산의 처분은 순자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아니다. 반면에 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다. 일반정부부문에서 비용의 주요 유형으로는 피용자 보상,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 고정자본소

비, 이자, 보조, 출연, 사회급여 등이 있다. 이를 비용의 경제적 분류라고 하며, 비용은 또한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될 수도 있는데, 이를 ‘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라고 한다.

〈표 1〉에서 보면, 여러 가지 수지와 함께 ‘지출(expenditure)’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지출은 비용(expense)과 비금융자산 순투자를 합한 값이며, COFOG의 총지출(총액)에 해당한다.

운영보고서의 두 번째 부분에는 비금융자산 순투자를 변동시키는 거래를 기록한다. 비금융자산은 대차대조표 중 자산 항목으로, 고정자산, 재고자산, 기타 유가물, 비생산자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위의 순운영수지에서 비금융자산 순투자(고정자본 취득-고정자본 처분-고정자본소비)를 차감하면 순융자(net lending)(+)/순차입(net borrowing)(-)이 도출된다. 순융자(+)/순차입(-)을 통해 일반 정부부문이 경제 내 다른 부문 또는 국외에 금융자원을 제공했는지, 혹은 여타 부문들이 창출한 금융자원을 일반정부부문이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운영보고서의 세 번째 부분에는 금융자산과 부채를 변동시키는 거래인 보전거래(financing transactions)를 기록한다. 금융자산과 부채도 대차대조표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 항목이다. 위의 순융자(+)/순차입(-)은 이 부분을 통해서도 도출되는데, 금융자산의 순취득에서 부채의 순부담을 차감한 값과 동일하다. 즉, 아래와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

$$\text{순융자(+)/순차입(-)} = \text{수익-지출} = \text{수익} - (\text{비용} + \text{비금융자산 순투자}) = \text{금융자산 순취득} - \text{부채 순부담}$$

GFSM 2014의 제5장에서는 수익의 기록시점과 측정방법, 세부 항목 분류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조세수익 중 조세환급(tax refunds), 조세구제(tax relief), 세액공제(tax credit) 등의 개념과 처리방법, 조세수익의 귀속 여부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 장의 대부분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일관성 있는 재정통계 작성을 위해 수익의 세부 유형 및 그 유형별 처리 방법 등을 설명하는 데에 할애하고 있다.

GFSM 2014의 제6장에서는 비용의 기록시점과 측정방법, 세부 항목 분류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비용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적과 기능별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경제적 분류를, 제6장 부록에서는 기능별 분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장에서도 비용의 세부 유형 및 그 유형별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비용의 세부 유형 중 고정자본소비는 고정자산이 물리적 감모, 정상적 진부화, 정상적 사고 손실 등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

한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다만 GFS에서는 자가 건설 관련 원가의 자본화(own-account capital formation)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정자본소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계정체계(SNA)에서의 고정자본소비 처리와는 상이하다.

고정자본소비(consumption of fixed capital)는 국민계정체계(SNA)와 경제학에서 '고정자본소모'로 사용되나, GFS에서는 원문 용어를 살리기 위해 '고정자본소비'로 번역하였다.

제6장 부록에서 소개하고 있는 '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COFOG)'는 UN/OECD의 COFOG 분류체계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COFOG란 일반정부단위가 달성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사회경제적 목표에 따라 지출을 분류한 것이다. COFOG는 분야(division), 부문(group), 등급(class) 등 세 가지 분류 단계를 가지며, 이 중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활동,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보건, 휴양·문화·종교, 교육, 사회보호 등의 총 10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COFOG의 개요, 분류항목, 경제적 분류와의 교차분석, 활용 등에 대해서는 차기 오피니언을 통해 소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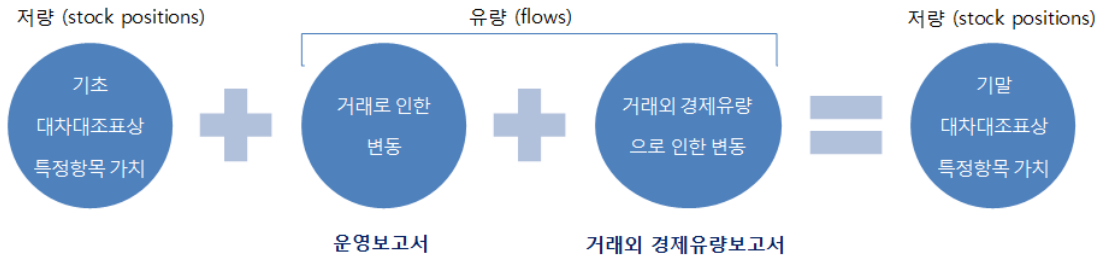
2.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GFSM 2014의 제7장에서는 대차대조표를 설명하고 있다. GFS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상의 대차대조표와 유사하며, 기록시점, 가치평가방법, 회계규칙 등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다만, 일반정부부문에서는 민간기업 대차대조표의 자본에 해당하는, 자산의 총가치에서 부채의 총가치를 차감한 것을 순자산(net worth)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정부 결산보고서에서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는 '재정상태표'로 불리나, GFS의 포괄범위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재정상태보고서), 비영리공공기관(대차대조표) 등이 포함되므로 보다 보편적인 용어인 '대차대조표'로 번역하였다.

GFSM 2014에서는 유량과 저량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게 하였는데, 운영보고서가 회계기간 동안의 거래에 관한 유량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대차대조표는 여기에 거래외 경제유량까지 포함한 유량 정보로 인한 저량의 변화를 보여준다. 즉, 아래와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

[그림 1] 대차대조표와 운영보고서의 결합



GFSM 2014에서 부채 중 우발부채에 대해 상세하게 분류하고 처리방법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발부채는 미래에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는 의무이다. 이러한 우발부채는 부채와는 달리 대차대조표에 인식되지 않으며, 대차대조표의 부기항목에 기록된다. 즉, 순자산을 계산할 때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발부채는 미래 시점에 일반정부가 여타 부문에 지게 되는 사회급여(연금) 등의 의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를 관리·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GFS에서 우발부채는 [그림 2]와 같이 파생금융상품 형태의 보증, 일회성 보증 등의 명시적 우발부채와 법적이나 계약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어떤 조건이나 사건이 실현되면 인식되는 암묵적 우발부채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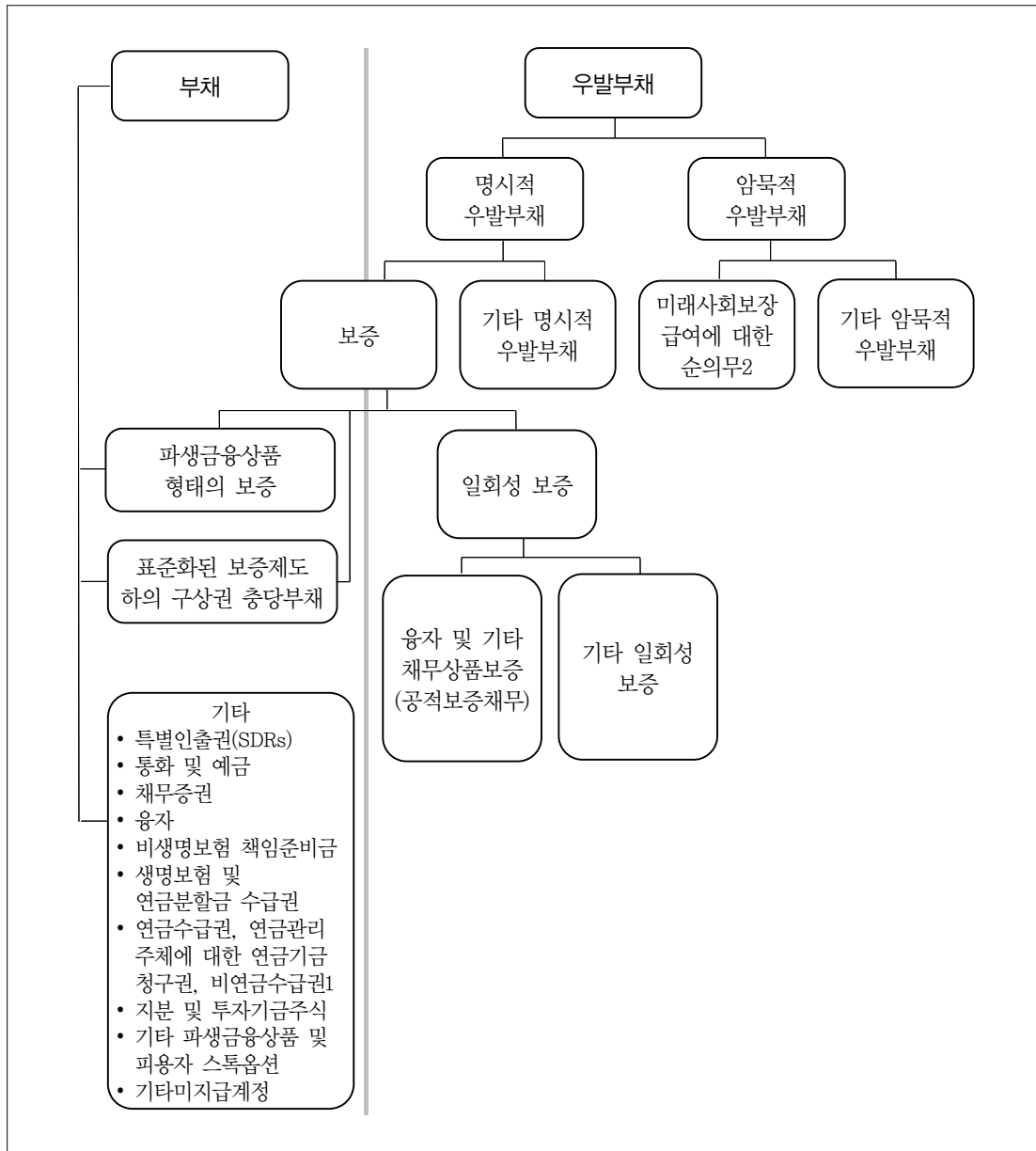
명시적 우발부채 중 ‘파생금융상품 형태의 보증’이나 ‘표준화된 보증제도하의 구상권 충당부채 (provisions for calls under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는 부채로 인식한다. 고용 관련 연금이 아닌 퇴직급여나 의료보장급여 같은 사회보장급여는 ‘암묵적 우발부채 중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암묵적 순의무(net obligations for future social security benefits)’로 부기항목에 기록된다.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고용 관련 연금은 고용주와 피용자 간의 보상 협정의 일환이다. 따라서 피용자가 획득한 금융청구권인 ‘연금수급권(pension entitlements)’은 부채로 기록된다.

특히 GFS에서는 이러한 부채들을 금융자산 유형 및 거래상대방별 교차분류, 금융자산의 만기별, 유형별 분류 등을 통해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음 호에서는 GFSM 2014의 나머지 항목인 비금융자산의 거래, 금융자산과 부채의 거래, 거래외 경제유량 등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 본 뉴스레터의 일부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림 2] GFS의 부채와 우발부채 분류



04

센터 동향

1 「201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지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작성을 지원하였다. 「201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은 작년에 발간한 「재무결산 오류사례집」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재무결산 오류사례 개요, 업무담당자 오류사례, 결산담당자 오류사례 등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결산 오류사례 개요에서는 최근 4개 회계연도 동안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연례 지적사항 20선을 도출하였고, 발생원인과 점검 및 조치방안을 서술하여 동일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업무담당자와 결산담당자 오류사례 파트에서는 재무결산 오류를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1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은 2015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설명회에서 배포되었으며, 담당공무원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고보조사업 회계관리체계 개선 연구



〈「보조금 회계관리체계 개선 연구」 관련 최종보고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수탁연구과제인 「국고보조사업 회계관리체계 개선 연구과제」를 완료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의 ‘국고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 12월)’의 일환으로 보조사업 관리 규정의 체계화,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강화, 집행점검 및 정산 등 사후관리 개선을 위한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써 보조사업자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연구 기간 동안 문헌조사,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간담회, 실무자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표준재무관리지침(안), 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안) 및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안),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안),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안)을 마련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각 지침(안) 및 기준(안)들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7월 8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며, 7월 23일 기재부 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본 연구와 관련하여 보조사업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을 검토하고, 유관기관 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보조사업 운영관리 지침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 배출권거래제 참여지자체 재무회계규정(안) 등 마련 연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한국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환경부 수탁연구과제인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 재무회계규정(안) 등 마련 연구」를 완료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15년 1월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배출권 제출의무를 가지게 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적용할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안과 재무회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연구를 위하여 지자체 예산과 회계규정에 대한 법제분석, 배출권거래제 회계처리기준 검토, 국내외 사례조사 등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자체의 배출권 총괄 담당자 및 결산담당자, 행정자치부와 환경부 등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거래제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안) 및 회계처리지침(안)을 마련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9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최종보고회에서 제기되었던 의견을 반영하여 9월 말 환경부에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배출권거래제 이해관계자 간담회(7.14.)〉

4 한국정부회계학회 하계세미나 참석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7월 16~17일 이틀 동안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된 한국정부회계학회 하계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지방회계법안 입법안 공청회에서는 지방회계법안의 추진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김완희 소장은 지방회계와 국가회계의 연계 필요성 및 방안 마련에 대하여 건의하였다. 또한 김완희 소장과 김은영 국가회계팀장은 각각 「국가보조금체계의 개선방안」, 「국가회계 해례본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하여 박종혁 한양대교수, 박정수 씨애프시스템 대표, 심재영 한국방송대 교수, 윤재원 홍익대 교수, 이장희 충북대 교수 등의 발제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관련 이슈에 대해 유관 학술단체, 외부전문가들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업무역량 강화는 물론 정책 동향 분석 및 성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정부회계학회 하계세미나(7.16.)〉

5 국가회계 해례본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완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한국정부회계학회(심재영 한국방송대 교수, 윤재원 홍익대 교수)에 위탁한 연구과제 「국가회계 해례본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의 최종보고회가 9월 24일 대우재단빌딩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이 국가회계정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이 관심있는 분야의 회계정보를 강조하고, 국민의 정보수준에 맞춘 요약된 가이드를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이해가능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재무제표를 포함한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국민의 정보 욕구와 지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해례본을 작성하고, 주요 포털 키워드 검색이나 대국민 보고회 등 능동적 전파 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정부회계학회는 국가회계 해례본을 국가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① 알기쉬운 결산보고, ② 알기쉬운 국가재무제표 Q&A, ③ 국가재무제표 해설서 세 가지로 구성하여 초안을 제시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향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갈 예정이다.



〈「국가회계 해례본 발간을 위한 기초 연구」 관련 최종보고회(9.24.)〉

6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센터 내 자문기구인 국가회계자문위원회(위원장 김완희)를 9월15일 대우재단빌딩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자문위원회에서는 ‘국가회계제도 개선 TF 추진 경과’를 보고하였으며, ‘비교환거래로 인한 비용 인식 기준개선’ 및 ‘외교부 빈곤 퇴치기여금 등 세입·세출외 부담금수익의 국가 재무제표 인식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고 센터 업무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7 2014회계연도 재정통계 작성 지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4회계연도 01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에 따른 재정통계 및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에 따른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재정통계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을 위해 공기업과 비영리공공기관이 제출한 공공기관 재정통계 보고서의 취합 및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향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중앙정부 재정통계와 지방정부 재정통계를 취합하여 일반정부 재정통계 및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해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8 2014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지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81개 준정부기관의 총괄재무제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 지표작성, 기관별 결산서 취합 교정 및 2014회계연도 준정부기관 총괄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질의 회신 또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기준개정 검토를 위해 사(死)규정 및 보완이 필요한 규칙 및 기준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기능조정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과거 공공기관 기능조정 사례 및 회계처리를 조사하는 등 적절한 회계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9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연수 지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의 일환으로 진행된 우즈베키스탄 역량강화연수(9.8. 서울 플라자호텔)에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였다. 특히, 김완희 소장은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formation System, and Management of National Treasury in Public Finance(GFS, PSDS)”라는 주제로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대상으로 발표 및 Q&A를 진행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의 일환으로 진행된 우즈베키스탄 역량강화연수(9.8. 서울 플라자호텔)에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였다. 특히, 김완희 소장은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formation System, and Management of National Treasury in

05

IPSASB(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회의참관 후기

임정혁·모완수 국가회계팀 연구원



1 개요

1. 일시 및 장소: '15.9.22.(화) ~ '15.9.25.(금) / 캐나다 토론토

2. 참석자: IPSASB 위원 및 참관인(GASB, XRB,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등)

〈참고〉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국제적인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된 회계기준임
- IPSAS를 제정하는 기구는 전 세계적인 공인회계사 연합체인 IFAC(국제회계사연맹) 산하 IPSASB(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임

2 주요 논의사항

이번 IPSASB Meeting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익 프로젝트(Revenue project)
2. 비교환비용 프로젝트(Non-Exchange Expenses project)
3. 재평가자산의 손상 공개초안(ED 57, Impairment of Revalued Assets)

3 논의결과 요약

이번 IPSASB Meeting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 프로젝트

IPSASB는 2015년 3월에 3개의 수익 관련 기준서*의 개선과 관련된 수익 프로젝트 개요(Revenue project brief)를 승인하였다. 이번 회의는 이 중에서 IPSAS 23 비교환수익(Revenue from Non-Exchange Transactions)과 관련된 다음의 4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 IPSAS 9 교환수익, IPSAS 11 건설계약, IPSAS 23 비교환수익

-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
- IPSAS 23 비교환수익 기준서와 타 기준서와의 연관규정
- 수증받은 용역(services in-kind)의 수익 인식
- 자본보조(capital grants)의 수익 인식

(1)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

현행 IPSAS 23은 특정 거래에 교환거래 요소와 비교환거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 이를 구분하여 별개의 거래로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요소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를 비교환거래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은 교환요소와 비교환요소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IPSASB는 수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s) 접근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수익 기준서를 2개로 분리하여 하나는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거래에 따른 수익을 다루고, 다른 하나는 수행의무가 없는 나머지 수익거래에 따른 수익을 다루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IPSASB는 공공부문의 경우 수행의무가 분명하지 않은 거래가 존재하므로 수행의무 존재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 역시 실체의 판단을 요구하게 되지만 이러한 방법이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과 관련된 논의의 범위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IPSAS 23 비교환수익 기준서와 타 기준서와의 연관규정

IPSASB는 호주회계기준위원회(AASB)의 공개초안 제260호, 남아공회계기준위원회의 GRAP 제23호에 따른 비교환수익 규정을 고려하여 향후 수익 프로젝트에서 다음의 이슈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① 비교환수익 거래에 따른 금융부채의 인식
- ② 비교환거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리스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의 인식
- ③ 자산 사용권리의 수익 인식

(3) 수증받은 용역(services in-kind)의 수익 인식

현행 IPSAS 23은 수증받은 용역(services in-kind)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용역의 유형이나 특징을 수증받은 보고기간에 걸쳐 공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UN 등 일부 공공부문 실체의 경우 이러한 용역의 수증이 수익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IPSASB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수증받은 용역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할지 여부를 향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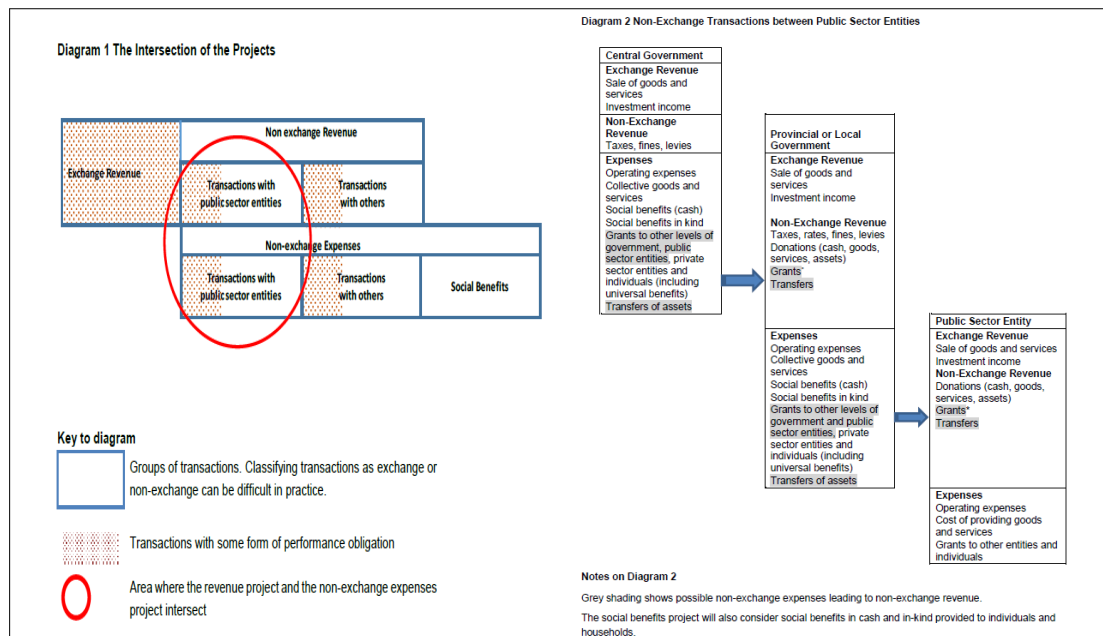
(4) 자본보조(capital grants)의 수익 인식

현행 IPSAS 23은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이를 수취 시점에서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무성과(financial performance)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IPSASB는 자본보조금의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비교환거래 요소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자본보조와 관련된 이슈를 수익 프로젝트에 계속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비교환비용 프로젝트

IPSASB는 2015년 6월 회의 결과, 공공부문 실체간의 비교환거래가 일어났을 때 일방은 비교환 수익을 인식하고 일방은 비교환비용을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므로 회계처리의 대칭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비교환비용 프로젝트팀과 수익 프로젝트팀이 공동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비교환비용 프로젝트팀과 수익 프로젝트팀은 양 프로젝트의 공통범위로 타 수준 공공부 문 실체에게 대한 보조금 및 자산이전 거래를 제시하는 한편, 대표적인 연관사례를 발굴하여 보고 하였다.

공통범위 대표사례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공공부문 실체 간의 비교환거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비교환거래에 수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s)와 부가요 소(additional factors)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10개의 사례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위원회 는 현재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을 참고하여 설정하고 있는 수행의무 의 정의를 공공부문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부가요소의 종류를 수급조건(Eligibility Requirements), 시간제약(Timing Restriction), 예산배정(Appropriation)에서 더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3. 재평가자산의 손상 공개초안

IPSASB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공개초안 57호 재평가자산의 손상(ED 57, Impairment of Revalued Assets)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승인하였다. 공개초안 57호는 재평가 금액으로 측정된 유형자산(PP&E)과 무형자산 역시 IPSAS 21과 IPSAS 26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IPSAS 21 비현금창출자산의 손상과 IPSAS 26 현금창출자산의 손상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기존의 IPSAS 21과 IPSAS 26에서는 재평가된 자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상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전체 재평가 금액 중 얼마만큼이 손상과 관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된 공개초안에서는 재평가된 자산도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검사를 수행하여 그 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정된 IPSAS 21과 IPSAS 26에 따른 손상검사를 통해 재평가된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과 IPSAS 17에 따른 재평가를 통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해당 기준서에 관련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기로 하였다.

4 맺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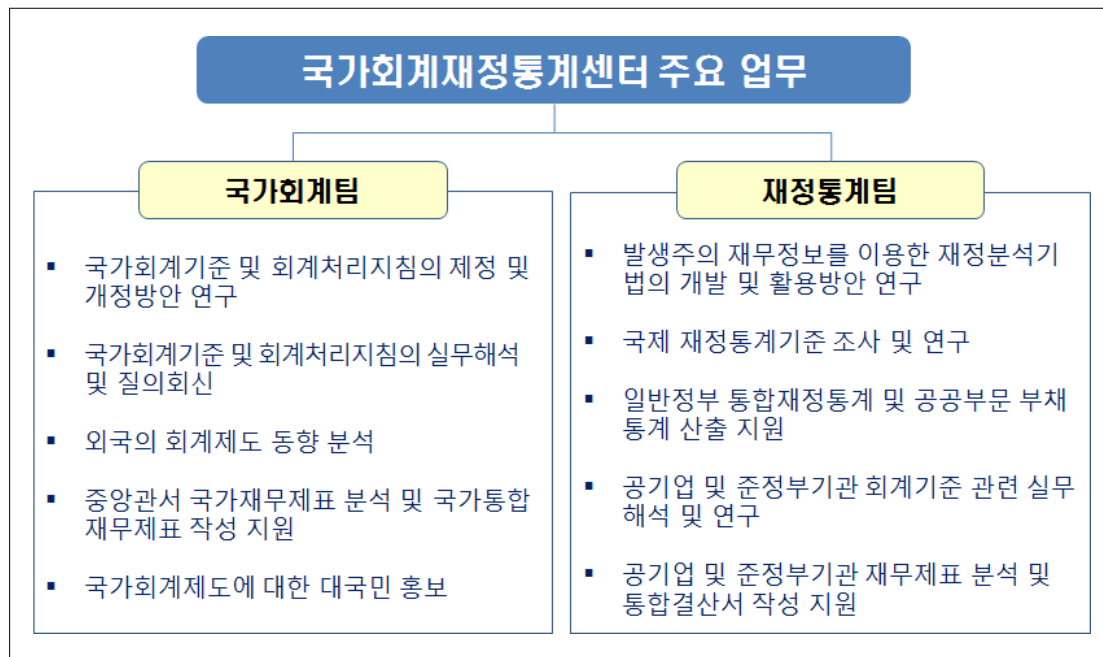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이번 IPSASB Meeting의 참관을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의 최근 주요 이슈를 검토함으로써 국가회계 관련 최근 국제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IPSASB의 연구 프로젝트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국가회계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비교환거래)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06

공지사항

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6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우리 센터에서는 2016년도 수행할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과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 받은 주제는 자체 심의를 통해 기획과제, 정부수탁과제, 위탁과제 등으로 선정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제 제안과 관련한 센터 팀별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과제를 제안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뉴스레터 구독 신청 안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에서 가입신청 또는 ② Tel. 044-414-2265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는 국가회계관련 뉴스, 발간자료, 기준 및 법령, 세미나 및 교육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소 국가회계에 관하여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할 수 있는 코너와 FAQ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편 집

김완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총괄)

김은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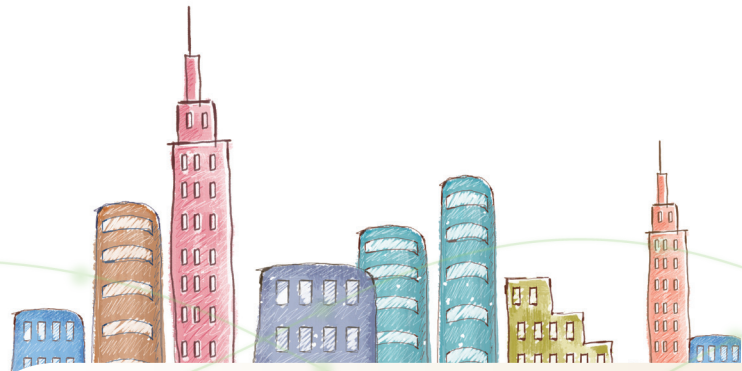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 044-414-2114(대표), <http://gafsc.kipf.re.kr>



전/략/목/표

■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기준의 충실한 이행 방안 마련
재무제표 공시자료 유용성 제고 방안 마련
체계적인 국가회계기준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수행

■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도 제고

원가정보의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한 방안 마련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재정지표 개발
각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자료 제공

■ 국내외 회계환경변화 대응

외국정부회계제도(미국, 영국, IPSAS 등) 동향 분석 및 연구
공공부문(지방, 공공기관) 회계환경 동향 분석 및 연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공감대 형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선도합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Homepage <http://gafsc.kipf.re.kr>

2015년 9월 30일 발행